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3.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21일, 한병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2. 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1.) 상정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6.)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6. 3. 17.)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 1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병도의원)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도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부의할 수 없고 위원 자격도 제외되어 있음.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교육학예에 관한 집행권과 대표권을 가진 교육감이 지원위원회 참여하고 부의사항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자치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무총리 소속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에 도교육감의 참여권과 부의사항 제출권을 부여하고,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제117조부터 제122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1. 도교육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참여권 및 심의사항 부의권 부여 등

가. 도교육감에게 지원위원회 참여권 및 심의사항 부의권 부여

개정안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위원에 도교육감을 추가하고, 도교육감이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9호 및 제3항).

헌법 제31조[1]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2]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도 교육감을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독립된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시·도 교육감은 해당 시·도를 대표하여 교육·과학·기술·체육 등 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 관련 소송 및 재산 등기 등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

---

1)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도를 대표한다.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종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에도 이와 유사한 특별자치시·도 지원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음.

지원위원회는 전북자치도의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행정규제 완화 등 광범위한 사안을 심의하며, 심의 과정에서 교육 인프라 확충, 인재양성, 교육재정 지원 등 교육·학예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사항이 함께 논의될 수 있음.

《 특별자치시·도 간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비교 》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북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제주자치도의 조직·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전북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강원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제주자치도의 행정 및 재정자주권 제고와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우대 부여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제4조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전북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주자치도의 행정규제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3) 지원위원회 위원: 국무총리(위원장),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산림청장, 새만금개발청장,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도시개발·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국무총리가 임명·위촉

전북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3조에 따른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제20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에 관한 사항	-
제77조에 따른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에 관한 사항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해제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과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	-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의료기관의 유치와 설립 지원에 관한 사항	-
-	-	국제적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	-	제주자치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
-	-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의 사업추진과 발전방안,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

그러나 현행법은 전북자치도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만을 명시하고 있어 도교육감은 지원위원회 회의에 법정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지 못하며, 교육·학예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도지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만 심의사항으로 부의할 수 있는바, 이로 인해 도교육감이 소관 사무와 밀접한 국가-지방 간 협의 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4)]

이에, 개정안은 지원위원회 위원에 도교육감을 추가하고, 도교육감에게 심의사항 부의권을 부여함으로써, 헌법 및 「교육자치법」 등에서 보장하는 교육감의 독립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또한, 특별자치도가 고도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시범·선도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전북자치도에서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가 연계된 새로운 분권 모델을 제시하고, 향후 도의 발전전략 수립과 교육정책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국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전국 시·도 및 다른 특별자치도 교육감과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상 일반 시·도의 교육감은 지원위원회와 같은 국무총리 소속 법정 위원회에 상시 위원 자격으로 참여하지 않고, 주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제주·강원·세종의 지원위원회 역시 도교육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바,

전북자치도에만 도교육감에게 지원위원회 참여권 및 심의사항 부의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 시・도와의 형평성 및 다른 특별자치시・도 법체계와의 일관성・통일성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

4) KBS, "'중복 감사에, 특례 발의권도 없어'…전북 '교육 자치' 반쪽 우려", 2024. 1. 30.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8838

요할 것으로 보임.

둘째, 「지방자치법」 제114조[5]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이 도지사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지원위원회는 전북자치도의 종합적인 발전전략과 국가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일반사무와 교육사무가 모두 포함되며, 현행 제도에서도 도교육감은 도지사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학예 관련 안건을 간접적으로 지원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음.

개정안과 같이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모두 위원으로 참여하고 부의권을 행사하는 구조에서는 개별 안건에 따라 전북자치도 소속 위원 간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원위원회 내에서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역할 및 권한을 어느 범위에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이와 관련하여 한병도의원안은 도교육감의 심의사항 부의권을 「지방자치법」 제135조(교육·학예)의 사무로 한정하여 교육자치의 범위 내에서만 도교육감의 독자적 권한을 인정하는 반면, 윤준병의원안은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고 도교육감에게 도지사와 동일한 수준의 부의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도교육감의 부의권을 교육・학예 사무로 한정하는 방안이 도지사의 대표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교육자치의 독립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제도 도입 취지에 상대적으로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5) 「지방자치법」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 심의사항 부의권 관련 개정안 비교 》

현 행	한병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9.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9. ----------도지사와 도교육감(「지방자치법」 제135조의 사무에 한정한다)이----------	9. ----------위원장,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현행 제도에서도 도교육감이 도지사를 통하여 지원위원회에 교육·학예 관련 안건을 부의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부의권을 부여할 필요성이 크지 않고, 도지사와 도교육감이 동일 사안에 대하여 상이한 안건을 각각 부의할 경우 행정·재정적 비효율과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도교육감에게 지원위원회 참여권 및 심의사항 부의권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나.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전북자치도 관련 법률안 의견제출권 부여

개정안은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전북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의견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내용이 관계 법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개정안은 현행 「제주특별법」 제19조[6]에 규정된 제주도지사의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전북특별법」에도 도입하는 한편, 의견 제출의 주체를 도지사에서 도교육감(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규제완화·재정·교육 및 특례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중앙정부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특히 교육자치 분야의 입법 수요를 도교육감이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 「제주특별법」은 도지사에게만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인정하고 있고, 강원자치도 및 세종시에는 유사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과 같이 도지사와 도교육감 모두에게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부여할지 여부는 다른 시·도 및 특별자치도와의 형평성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특히 도교육감에게 별도의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① 지방자치단체 통할대표권을 가진 도지사가 법률 대응을 총괄할 필요성, ② 일반사무와 교육·학예 관련 법률을 구분할 실익, ③ 교육자치의 전문성·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6) 「제주특별법」

제19조(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① 도지사는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주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을 지나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통보하여야 하고,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필요가 있다고 보임.

한편, 개정안이 채택되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17조제1항[7]이 "제주자치도 관련 법률안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제주자치도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현행법 제12조제1항의 지원위원회 심의사항에 "제12조의2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입법 체계상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행정안전부는 「제주특별법」 사례를 감안할 때 법률안 의견제출권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하여 그 권리 범위에서 도교육감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참고로, 특별자치도 도교육감에게 지원위원회 참여권과 심의사항 부의권을 부여하고, 도지사 및 도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제출권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북특별법」·「제주특별법」·「강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1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되었다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음.[8]

---

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제19조에 따라 제출된 법률안 의견의 검토 등에 관한 사항

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0422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620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19622호)」

2. 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

개정안들은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일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현행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가, 교육·학예 관련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가 각각 수행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7조부터 제122조까지).

현행 법령은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가 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등을 포함하여 전북자치도 사무 전반에 대한 자치감사를 수행하도록 하고,[9] 7명의 감사위원 중 도의회와 도교육감이 각각 2명씩을 추천하도록 하여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고 있음.

한편, 전북교육청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체감사 규칙」에 근거하여 자체 감사조직을 두고, 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교육·학예 사무에 대해서는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의 감사와 도교육청의 자체감사가 병존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자치감사 권한은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교육·학예 사

---

9)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전북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감사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북자치도 본청 및 그 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3. 시·군 및 그 시·군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과 의회사무부서
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교육지원청(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교육기관(유치원·학교),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공사·공단) 및 전북자치도가 출자·출연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 도교육감이 법률에 따라 설립한 법인
6.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도비 보조 법인·단체·기관 등

무의 집행책임은 도교육감에게 부여되어 있어, 교육·학예 사무에 관한 감사 권한과 집행책임이 일치하지 않아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10)]

이에, 개정안들은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일반사무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한 자치감사 체계를 이원화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집행책임과 감사책임을 일치시킴으로써 교육감의 책임행정과 교육자치의 실질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교육·학예 사무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교원 인권 등 일반행정과는 다른 특수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영역인바, 교육 분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보임.

다만, 개정안의 심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도지사가 전북자치도의 재정 및 정책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현행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및 다른 특별자치시ㆍ도 법체계와의 일관성을 고려할 때, 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전북자치도에만 둘 것인지, 향후 다른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전국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10) 전북일보, 「'교육감 자체 감사권' 전북특별법에 담아야」, 2024. 1. 31.
https://www.jjan.kr/article/20240131580095

둘째, 각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 구성 방식이 상이하므로, 감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상호 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감사위원회를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위촉하되, 그 중 2명은 도의회가, 2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병도의원안은 도지사 및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를 각각 5명으로 구성하고, 각 위원회의 위원을 해당 기관장이 임명·위촉하되 도의회가 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하여 다른 기관장의 추천을 배제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운영의 효율성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반면,

윤준병의원안은 두 감사위원회를 각각 7명으로 구성하면서 도지사 소속 위원회 위원은 도의회와 도교육감이, 도교육감 소속 위원회 위원은 도의회와 도지사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 간 상호 견제와 균형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됨.

따라서 동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신속·효율적인 운영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감사위원회 간 견제와 균형에 비중을 둘 것인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임.

한편,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를 전제로 하는 경우, 한병도의원안과 같이 감사위원장 임명, 자치감사 사무기구 구성, 자치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결과 처리 등 관련 조문을 일관된 체계로 정비하여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설치 관련 개정안 비교 》

구 분	현 행	한병도의원안	윤준병의원안
설치 및 감사대상 (§117①)	• 도지사 소속 단일 감사위원회	• 도지사 및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각각 설치	(한병도의원안과 같음)
	• 도 소관업무 일체 감사(교육·학예 포함)	• **일반 자치사무는 도지사** 소속, **교육·학예 자치사무는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가 각각 감사	
인원 (§117③)	7명 이내	각 감사위원회별 **5명** 이내	각 감사위원회별 **7명** 이내
임명·위촉 (§117④)	• 도지사가 위원 임명·위촉	•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도지사가 임명·위촉 •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도교육감이 임명·위촉	•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도지사가 임명·위촉 •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도교육감이 임명·위촉
	• **도의회**와 **도교육감**이 각각 2명씩 추천	• **도의회**가 각 위원회 위원 2명씩 추천	•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도의회와 **도교육감**이 각각 위원 2명씩 추천 •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도의회와 **도지사**가 각각 위원 2명씩 추천
감사위원장 (§118) 감사위원회 사무기구 (§119)	도지사가 임명	•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도지사가 임명** •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도교육감이 임명**	(미규정)
자치감사 기구 (§120④)	**감사계획**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에게 통보	• 도지사 소속 감사위원회: 감사계획을 감사원장, **행안부장관, 도지사**에게 통보 • 도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감사계획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도교육감**에게 통보	(미규정)
자치감사 결과 처리 (§121)	• 감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 • **교육·학예** 자치감사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	• **일반** 자치사무 감사결과: 도지사에게 **보고** • **교육·학예** 자치사무 감사결과: 도교육감에게 **보고**	(미규정)
징계·문책 사유 시효정지등 (§122)	조사개시 및 종료 시 **도지사**에게 통보	조사개시 및 종료 시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에게 통보	(미규정)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이광희 의원)

전북특별법 및 강원특별법 개정안에서 요구하는 다수의 특례가 중앙정부의 입장에 따라 좌우되면서 지방의회 및 주민참여 등 자치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통합특별시·특별자치도 및 일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이양의 적정 수준과 범위를 검토·보완할 필요가 있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